

#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

전주비전대학교(이하 '대학교'라 한다.)와 \_\_\_\_\_회사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'회사'라 한다.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## 제1조(목적)

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## 제2조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-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.
- ②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모 집 학 과	위 탁 생 수	비 고

## 제3조(위탁생의 자격)

-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,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(입학일 기준)\*  
\* 입학일 기준(2019. 3. 1)으로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 경력 합산  
※ 조건부 입학 시 학기개시 30일 이내 산업체와 미협약할 경우 해당 산업체 위탁생을 제적  
- 단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, 초·중·고 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(2019.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,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(대학-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)

## 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-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천한다.
- ②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.
- ④ 대학-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(마이스터고 포함) 졸업(예정)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, 초·중·고 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(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입학 후 관련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제적처리한다.

## 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.

### 제6조(회사의 시설사용)

회사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그 시설을 본 위탁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.  
※ 회사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을 별도로 첨부한다.

### 제7조(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

위탁회사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 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### 제8조(교육비 및 등록)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회사와 협의하여 하향조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률 등을 명문화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### 제10조(대학교에 대한 회사의 지원)

- ① 산업체는 필요한 분야를 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 개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개발비는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대학교와 산업체는 긴밀한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해 성실하게 상호 협조한다.

### 제11조(위탁교육 심의위원회)

- ① 위원장은 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산업체 임원진 및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, 총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, 결정하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결정, 처리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대   학   교 : 전주비전대학교 총 장 (인)

기 관 (업 체 명) :

(인)